

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(제2조의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유지할 것

- 1) 품질경영체제 관련 인증(ISO 9000시리즈)
- 2) 국제표준기구의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관련 인증(KS Q ISO/IEC 17025)

나.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, 손해배상 업무의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 절차 및 체계를 마련할 것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,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선박평형수처리 기술과 관련하여 공동개발 또는 특허와 같은 이해관계가 없을 것

가.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위한 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등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

나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

다.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제조와 관련된 장비 및 재료 등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

3.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학 분야 전문인력 2명 이상

- 1) 생물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2) 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) 생물학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

- 1) 화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2) 화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화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) 화학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

경력이 있는 사람

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·전자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

- 1) 전기·전자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응용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3) 전기·전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) 전기·전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6) 전기·전자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7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 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기·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,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·기관 분야 전문인력 1명 이상

- 1) 기계·기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3) 기계·기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) 기계·기관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6) 기계·기관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,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7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 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계·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,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